

1. 國政監査 過程에서 나타난 勤勞所得稅 負擔의 變化

- 지난 9월 16일 재경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1996~2001년 사이에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1.7%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실질소득세 부담은 7.1% 증가하여 실질소득세 증가율이 실질소득 증가율의 3.7배에 이르렀다고 함.
- 각종 언론은 정부가 그 동안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들의 세경감 혜택을 늘렸다고 하지만,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조세의 불공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
- 소득세는 소득 증가와 소득분포의 변화, 세법개정 및 소득포착률(자영업자)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데, 위에서는 소득 증가와 세법개정의 두 가지 요인만 언급함으로써 지난 5년간의 세부담 변화 추이를 잘못 해석

2. 所得稅 負擔 變化의 決定要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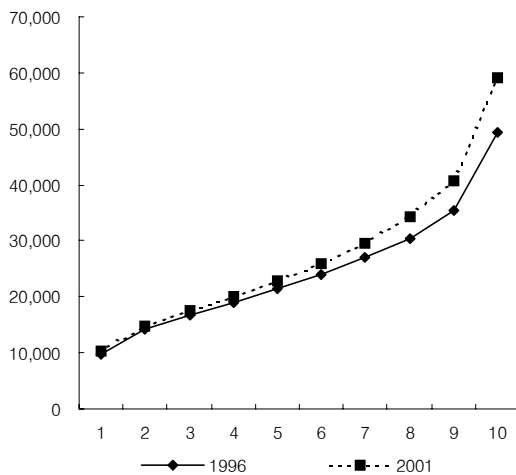
- 1996~2001년 사이의 소득세 변화는 소득 증가, 소득격차의 확대, 소득포착률 제고(자영업자), 세법의 변화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
- **소득증가:** 지난 5년간 취업근로자는 12.30%, 자영업자는 12.37%의 소득증가
 - 2001년 현재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득은 3,167만 8천원으로 취업근로자가구의 3,087만원보다 다소 높음.
 -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중·소득층보다 높아 소득격차가 확대
 - 실질소득증가율: 9분위와 10분위 - 각각 14.64%, 19.28%
 - 1분위와 2분위 - 각각 3.93%, 4.33%
- ※ 본고의 취업근로자가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의 근로자가구에 해당 재경부 자료와는 자료 가공 및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수치가 다소 불일치

- 소득격차의 확대: (취업)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.244 → 0.273으로 상승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시사(<표 1> 참조)
 - 그러나 실질소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([그림 1] 참조)

- 소득포착률의 상승(자영업자가구): 53.4%(1996년) → 55.6%(2000년)로 추정
 - 2001년 추정치는 현재 분석중

- 주요 소득세법 개정(1996~2001년)
 - 신용카드소득공제의 도입,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공제 한도 폐지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상승
 - ※ 2002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을 1/10씩 인하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

[그림 1] 실질소득의 비교
(단위: 천원)



<표 1> 지니계수의 추정결과(총소득 기준)

	전체	근로자가구		자영업자
		전체	취업근로자	
1996	0.24685	0.25258	0.24448	0.23473
2001	0.27222	0.28288	0.27276	0.25156

자료: 성명재(2002)

3. 稅負擔의 衡平性 變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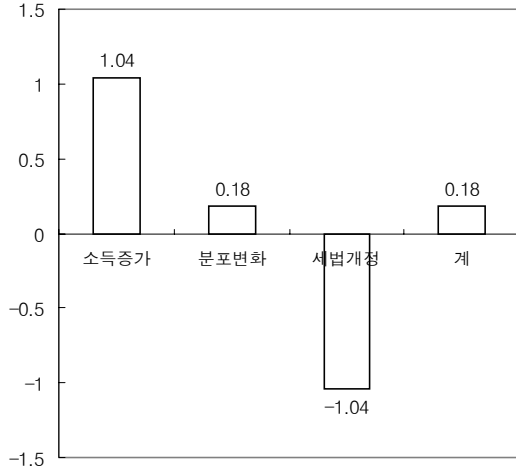
가. 평균 세부담의 변화

- 1996~2001년 동안 (취업)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부담률은 2.78%→2.96%로 0.18%p 상승
 - 명목소득 증가로 1.04%p 상승
 - 세법개정으로 1.04%p 하락하여 이를 완전히 상쇄
 -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해 소득편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0.18%p 상승
 - 취업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 변화: 0.24448(1996년) → 0.27276(200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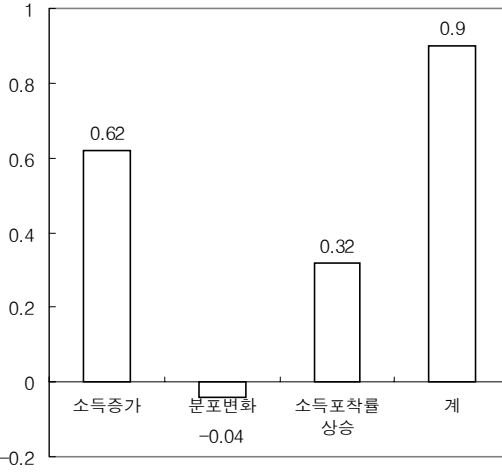
- 1996~2001년 동안 자영업자가구의 종합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은 3.79%→4.69%로 0.90%p 상승
 - 명목소득 증가로 0.62%p 상승
 - 소득포착률의 상승(53.4%→55.6%)으로 0.32%p 상승
 - 소득분포의 변화는 자영업자의 실질세부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.
 - 소득분포 변화로 인한 실효세부담률은 0.04%p 하락에 그침.
 - 자영업자의 경우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세 개편은 없었음.

- 근로자의 실질근로소득세 부담 증가는 소득격차의 확대효과와 거의 일치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실질종합소득세 부담 증가는 주로 소득 증가와 소득포착률 상승에 기인하여 대조적

[그림 2] 요인별 실효근로소득세율의 변화 기여도(취업근로자)
(단위: %p)



[그림 3] 요인별 실효종합소득세율의 변화 기여도(자영업자)
(단위: %p)



<표 2> 시나리오별 소득세 분포

(단위: 천원, %)

취업근로자	세부담 평균	전단계 대비 증감률	A대비 증분의 증감률	총소득 대비 실효소득세부담률	전단계 대비 증분(%p)
A	719	-	-	2.78	-
B	1179	+64.0	+64.0	3.82	+1.04
C	1235	+4.7	+7.8	4.00	+0.18
D	912	-26.2	-44.9	2.96	-1.04
E	912	+6.8	+8.1	2.96	0.00
A→E	-	-	+26.8	-	+0.18
자영업자	세부담 평균	전단계 대비 증감률	A대비 증분의 증감률	총소득 대비 실효소득세부담률	전단계 대비 증분(%p)
A	1003	-	-	3.79	-
B	1395	+39.1	+39.1	4.41	+0.62
C	1383	-0.9	-1.2	4.37	-0.04
D	1383	0.00	0.00	4.37	0.00
E	1486	+7.4	+10.3	4.69	+0.32
A→E	-	-	+48.2	-	+0.90

주: A - 1996년 자료 + 1996년 소득세법 (1996년 소득포착률)
 B - 1996년 자료×평균소득증가율 + 1996년 소득세법 (1996년 소득포착률)
 C - 2001년 자료 + 1996년 소득세법 (1996년 소득포착률)
 D - 2001년 자료 + 2001년 소득세법 (1996년 소득포착률)
 E - 2001년 자료 + 2001년 소득세법 (2000년 소득포착률)
 A→B: 명목소득 증가, B→C: 분포 변화, C→D: 세법개정, D→E: 소득포착률 상승
 2001년의 소득포착률은 정보부족으로 아직 추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추정치를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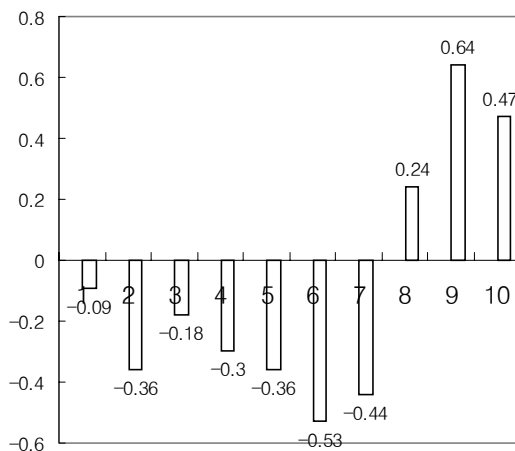
나. 세부담의 형평성

- 1996~2001년의 소득격차 확대는 주로 고소득층의 빠른 소득 증가에 기인하며, 실질근로소득세 부담의 증가 역시 대부분 고소득근로자(상위 30%)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
 - 반면 하위 70%의 경우에는 1996년보다 오히려 실효세부담률이 하락
 - 근로소득세 실효부담률의 상승은 고소득층의 실질세부담 증가분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세부담 감소분을 상회하였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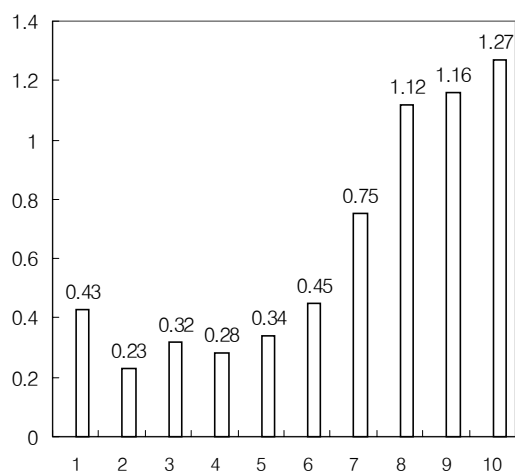
- 그러므로 근로소득세의 실질부담은 평균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역설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의 형평성, 즉 누진도는 오히려 상승
 - 이러한 변화는 정책당국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준 결과를 초래

- 1996~2001년 동안 (취업)근로자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세 부담은 26.8% 증가한 데 비해 자영업자가구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48.2% 증가
 -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높다는 점, 사업소득의 탈루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가구유형간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제고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

[그림 4] 소득계층별 실효소득세율의 변화(취업근로자) (단위: %p)



[그림 5] 소득계층별 실효소득세율의 변화(자영업자) (단위: %p)



다. 종합평가

- (취업)근로자가구의 경우 언론보도와 같이 실질근로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확인되었으나, 세 경감이 미흡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미약
 - 소득격차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실질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켰으나 이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
 - 세법개정을 통해 중·저소득층의 실질소득세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상승

- 단순히 근로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근로자를 위한 세경감이 필요하다는 직선적·단선적인 논리는 부적절